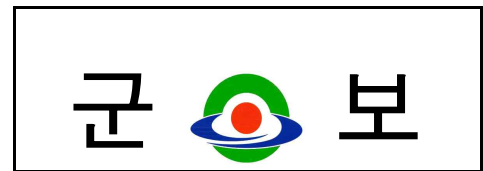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403호 2022. 11. 14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-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2-27호)
-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2-1398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,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년 11월 11일

예 천 군 수

1. 조례명 : 예천군 체육진흥 조례

2. 개정이유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예천군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2조의2)
 -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및 부대경비, 사무실 운영경비,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대해 규정

4. 개정조례안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예천군 체육사업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eelsoo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, 예천군 체육사업소 체육진흥팀

3) 팩스 : 054-650-641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체육사업소(전화: 054-650-6414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

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 례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운영비 지원) ① 군수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.

1.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및 부대경비
2. 사무실 운영경비
3.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

② 예천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2조의2(운영비 지원) ① 군수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.</u> <u>1.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및 부대경비</u> <u>2. 사무실 운영경비</u> <u>3.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</u> <u>② 예천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.</u>

【국민체육진흥법】

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4일

예 천 군 수

1. 조례명 :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2. 개정이유

상위법인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의 개정(2016. 5. 29.)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에서 규정한 단체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재향군인회의 육성 및 발

전을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및 단체운영비 신설(안 제5조)

-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: 법 제16조제3항 → 법 제16조제2항
- 상위법에 따라 “재향군인회 운영비” 신설

나. 조문 삭제(안 제6조)

- 안 제5조에 예산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

4. 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주민복지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kpsix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주민복지실

3) 팩스 : 054-650-620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주민복지실(전화: 054-650-6957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 중 “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”을 “법 제16조제2항”으로, “예산의 범위 안”을 “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재향군인회 운영비
2.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3. 재향군인의 안보의식 향상 교육사업
4. 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
5.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
6.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
7.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예산지원) 군수는 <u>재향군인회</u> 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<u>법 제16조제3항</u> 에 따라 <u>예산의 범위 안에서</u>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	제5조(예산지원) ----- <u>법 제16조 제2항</u> ----- ----- <u>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</u>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1. <u>재향군인회 운영비</u> 2. <u>국가를 위하여 희생 ·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</u> 3. <u>재향군인의 안보의식 향상 교육사업</u> 4. <u>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</u> 5. <u>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</u> 6. <u>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</u> 7. <u>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 ·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
제6조(지원대상 사업) <u>법 제16조 제3항</u> 에 따라 <u>재향군인회에</u> 예	제6조(지원대상 사업) <u><삭 제></u>

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2. 재향군인의 안보의식 향상 교육사업
3. 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
4.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
5.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
6.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